

국 민 권 익 위 원 회 의 결

의 안 번 호 제2016 - 580호

의 안 명 의류수거함 설치 및 운영관리 개선 방안

대 상 기 관 환경부, 국토교통부, 전국 기초자치단체

의결연월일 2016. 7. 25.

주 문

「의류수거함 설치 및 운영관리 개선 방안」 권고안을 별지와 같이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47조 규정에 따라 환경부장관, 국토교통부장관, 전국 기초자치단체장에게 권고한다.

이 유

별지와 같다.

이에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2016년 7월 25일

위원장	성영훈	_____
위원	김인수	_____
위원	곽진영	_____
위원	이상민	_____
위원	최학균	_____
위원	박창수	_____
위원	신근호	_____
위원	노재석	_____
위원	정갑생	_____
위원	양재영	_____
위원	이현수	_____
위원	김종보	_____
위원	허용석	_____
위원	전준경	_____
위원	이호용	_____

【별지】

의류수거함 설치 및 운영관리 개선 방안

2016. 7.



국민권익위원회

목 차

I . 추진배경	1
II . 관련제도 및 일반현황	2
① 관련제도	2
② 일반현황	3
III . 현황 및 문제점	5
① 폐의류 배출방법 및 의류수거함 설치근거 불명확	5
② 의류수거함 설치 및 운영관리 미흡	7
③ 의류수거함 운영업체 선정방법의 투명성 미흡	15
IV . 개선방안	17
① 폐의류 관련규정 명확화	17
② 의류수거함 설치 및 운영관리 개선	18
③ 의류수거함 운영업체 선정방법 등 개선	23
V . 조치사항	24

I. 추진배경

- 근거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7조
- 2015년 비정상의 정상화 정부핵심과제 : 일상생활에 불합리한 관행근절
 - ※ 최근 3년간(2013. 1.~2015. 12.) 국민신문고에 총 1,552건의 고충민원 제기

○ 헌옷은 1998년 외환위기 당시 불우이웃 돕기 등 사회복지 사업을 목적으로 비영리 단체 또는 개인이 수거하여 재활용

- 초기에는 의류를 비닐봉투에 담아 재활용품과 같이 배출·수거하였으나, 수거과정에서의 폐기물화 및 재활용 곤란에 따라 전용수거함 형태로 발전

※ 현재 전국에 약 10.6만여 개가 설치·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추정

○ 하지만, 단독주택, 다세대주택 등이 밀집된 지역에 설치된 대다수의 의류수거함은 불법 설치·운영

※ 아파트지역은 사유지이므로 관리사무소, 부녀회 등과 폐기물 수거업체가 협의하여 설치·운영

- 「도로법」상 도로점용허가 대상인지 여부가 명확하지 않아 민간 협회, 단체, 업체 등에서 임의로 설치·운영

※ 국민권익위원회 실태조사결과, 226개 자치단체 중 11개 자치단체만 도로점용허가 후 의류수거함 설치·운영

○ 의류수거함 운영·관리 등에 대한 세부기준이 없어 무분별한 설치 및 관리 미흡으로 민원발생

- 의류수거함 설치장소, 규격, 색상, 의류 수거시기 등 운영·관리기준 미비로 정주환경 저해

- 보행자·차량 통행불편 및 교통사고 유발요인으로 교통안전에 위해

○ 이에 의류수거함에 내재되어 있는 문제점을 개선하여 운영·관리의 고도화를 통해 민원해소 및 자원재활용의 효율화 제고

☞ 추진경과 : 계획수립(3월), 실태조사(4월), 관계기관 의견수렴(6월), 안건상정(7월)

II. 관련제도 및 일반현황

1 관련제도

□ 관련법령

관 련 법 령	주 요 내 용
폐기물 관리법	폐기물량 억제, 배출·처리, 처리업자 등에 대한 지도·감독 등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자원절약·폐기물 발생억제 및 적정처리, 자원 재활용 촉진 등
폐기물처리업 허가업무 처리지침	폐기물 수집·운반업, 중간처리업 등 허가처리에 필요한 사항
재활용가능자원의 분리수거 등에 관한 지침	재활용가능자원의 분류·보관·수거·운반 등에 관한 필요한 사항
지방자치단체 조례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등 자치단체에 위임된 사항 규정

□ 용어의 정리

용 어	주 요 내 용
재활용가능자원	사용되었거나 사용되지 아니하고 버려진 후 수거(收去)된 물건과 부산물(副産物) 중 재 사용·재생이용할 수 있는 것
재활용	폐기물을 재사용·재생이용하거나 재사용·재생이용할 수 있는 상태로 만드는 활동
재사용	재활용가능자원을 그대로 또는 고쳐서 다시 쓰거나 생산활동에 다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
재생이용	재활용가능자원의 전부 또는 일부를 원료물질(原料物質)로 다시 사용하거나 다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

2 일반현황

□ 인구 및 세대 현황

- 2015년 12말 기준 우리나라 전체 주민등록인구는 약 5,153만 명이고, 세대수는 약 2,101세대

구 분		2013년도		2014년도		2015년도	
		총인구수	세대수	총인구수	세대수	총인구수	세대수
전 국		51,141,463	20,456,588	51,327,916	20,724,094	51,529,338	21,011,152
특별시	서울	10,143,645	4,182,351	10,103,233	4,194,176	10,022,181	4,189,948
광역시	부산	3,527,635	1,404,663	3,519,401	1,421,648	3,513,777	1,437,818
	대구	2,501,588	960,265	2,493,264	970,618	2,487,829	982,360
	인천	2,879,782	1,118,988	2,902,608	1,136,280	2,925,815	1,154,004
	광주	1,472,910	563,599	1,475,884	573,043	1,472,199	580,427
	대전	1,532,811	584,877	1,531,809	592,508	1,518,775	597,008
	울산	1,156,480	431,595	1,166,377	442,250	1,173,534	451,688
특별자치시	세종	122,153	50,045	156,125	62,807	210,884	81,806
도	경기	12,234,630	4,712,324	12,357,830	4,786,718	12,522,606	4,885,012
	강원	1,542,263	6,649,013	1,544,442	673,978	1,549,507	685,005
	충북	1,572,732	644,062	1,578,933	656,321	1,583,952	669,503
	충남	2,047,631	857,699	2,062,273	871,459	2,077,649	885,968
	전북	1,872,965	766,699	1,871,560	774,562	1,869,711	782,986
	전남	1,907,172	815,769	1,905,780	823,667	1,908,996	833,901
	경북	2,699,440	1,139,387	2,700,794	1,153,559	2,702,826	1,169,648
	경남	3,333,820	1,320,887	3,350,257	1,343,984	3,364,702	1,367,142
특별자치도	제주	593,806	238,465	607,346	246,516	624,395	256,928

자료) 행정자치부 홈페이지

□ 자치단체 현황

○ 2015년 말 기준 우리나라의 총 자치단체 수는 226개

구 분		시·군·구			행정시·자치구가 아닌 구		읍·면·동				
		계	시	군	구	시	구	계	읍	면	동
계		226	75	82	69	2	35	3,502	220	1,193	2,089
특별시	서울	25			25			424			424
광역시	부산	16		1	15			206	3	2	201
	대구	8		1	7			139	3	6	130
	인천	10		2	8			149	1	19	129
	광주	5			5			95			95
	대전	5			5			79			79
	울산	5		1	4			56	4	8	44
	특별자치시	세종							13	1	9
도	경기	31	28	3			20	560	33	108	419
	강원	18	7	11				193	24	95	74
	충북	11	3	8			4	153	15	87	51
	충남	15	8	7			2	207	24	137	46
	전북	14	6	8			2	241	15	144	82
	전남	22	5	17				297	33	196	68
	경북	23	10	13			2	332	36	202	94
	경남	18	8	10			5	315	21	175	119
특별자치시	제주					2		43	7	5	31

자료) 지방자치단체 행정구역 및 인구현황, 행정자치부

Ⅲ.

현황 및 문제점

1. 폐의류 배출방법 및 의류수거함 설치근거 불명확

【현황 및 문제점】

□ 폐의류 배출방법이 현실과 괴리

- 재활용가능자원은 분리 배출·수거하여 재활용하도록 의무화(「재활용가능자원의 분리수거 등에 관한 지침」)
 - 의류 및 원단류(이하 ‘폐의류’라 함)는 종이팩, 유리병, 금속캔, 종이류 등과 같이 재활용가능자원으로 분리배출 대상에 포함
 - 폐의류 배출방법은 물기에 젖지 않도록 마대 등에 담거나 묶어서 또는 수거함에 배출하도록 운영
- 하지만, 폐의류 배출방법이 현실과 괴리로 효율적인 수집·수거 및 재활용 곤란
 - 폐의류를 마대 등에 담거나 묶어서 재활용가능자원과 같이 배출하는 경우 수거방법의 기계화·자동화(압축수거 등), 일반 쓰레기와 혼합 배출됨에 따라 폐기물화 되어 소각
 - 또한, 불특정다수인이 사전에 무분별하게 수거해 가는 과정에서 폐기물화 되어 재활용 곤란

- 그런가하면, 재활용가능자원과 함께 분리 배출한 폐의류를 효율적으로 재활용하기 위해서는 **별도의 전용수거장비(차량 등), 인원, 예산 등이 필요하여 자치단체에서 소극적 대처**

<분리수거대상 재활용가능자원의 종류>

구 분	종 류
생산자 재활용의무 대상 포장재	종이팩, 유리병, 금속캔, 합성수지류
생산자 재활용의무 대상 제품	전지류, 타이어, 윤활유, 전자제품, 형광등
기타 재활용가능 자원	종이류(신문지, 책자, 노트, 종이컵, 상자류), 고철류, 의류 및 원단류 , 영농폐기물류

<의류 및 원단류 배출요령>

종 류	세부품목	배출요령
의류 및 원단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면의류 · 기타 의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물기에 젖지 않도록 마대 등에 담거나 묶어서 배출 ※ 자치단체 또는 민간 재활용사업자가 비치한 수거함에 배출

※ 「재활용가능자원의 분리수거 등에 관한 지침」 [별표 1]

□ 의류수거함의 도로점용대상 여부 불명확

- 도로를 점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관할 도로관리청에서 도로점용 허가를 받도록 의무화
- 공작물·물건적치, 시설의 신설·개축·변경 또는 제거하거나 그 밖의 사유로 도로를 점용하려는 자는 도로관리청의 허가를 받도록 규정(「도로법」 제61조)
- 하지만, 의류수거함이 도로점용허가 대상인지 여부가 명확하지 않아 자치단체의 행정업무 수행에 혼란초래

- 도로점용대상(「도로법 시행령 제55조」)에 의류수거함이 명시되지 않다는 이유로 대다수의 기초자치단체에서 도로점용허가 기피

※ 국민권익위원회 실태조사결과, 226개 자치단체 중 11개 자치단체만 도로점용허가 후 의류수거함 설치·운영

※ 국민권익위원회 실태조사결과, 일부 광역시에서 기초자치단체에 의류수거함이 도로점용허가 대상에 포함(「도로법 시행령 제55조」 제7호'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에 포함)됨을 시달하였으나, 기초자치단체는 도로점용허가에 미온적 대처

<도로점용허가를 받을 수 있는 공작물>(「도로법 시행령」 제55조)

1. ~ 5. 생략
6. 간판(돌출간판을 포함한다), 표지, 깃대, 현수막, 현수막 게시시설 및 아치. 다만, 현수막 게시시설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관리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7. 버스표판매대·구두수선대·노점·자동판매기·현금자동입출금기·상품진열대,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8. 공사용 판자벽·발판·대기소 등의 공사용 시설 및 자재
- 9.~11. 생략
12. 제1호부터 제11호까지에서 규정한 것 외에 도로관리청이 도로구조의 안전과 교통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한 공작물·물건(식물을 포함한다) 및 시설로서 국토교통부령 또는 해당 도로관리청이 속해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 것

2. 의류수거함 설치 및 운영관리 미흡

□ 불법 의류수거함 설치·운영 만연

○ 단독주택, 다세대주택 등이 밀집된 지역에 설치된 대다수 의류수거함은 도로점용허가 없이 무단 설치·운영

- 단독주택지 등은 의류수거함을 주로 주택가 이면도로 전신주 옆, 골목길 모퉁이, 공한지 앞 도로변 등에 설치·운영

- 하지만, 대다수의 의류수거함이 도로점용허가 없이 민간단체, 협회, 업체, 개인 등이 영리를 목적*으로 임의로 설치하여 운영

* 수거한 폐의류는 국내 재판매 또는 동남아, 아프리카 수출, 분해 후 기름 걸레 판매 등으로 수익화

※ 공동주택에 설치된 의류수거함은 아파트 관리사무소, 입주자대표 등과 의류수거자와의 협약을 통해 설치·운영

- 그런가하면, 일부 자치단체는 관련업체 등과 업무협약 등을 통해 도로점용허가 없이 의류수거함을 설치·운영하도록 하여 불법성 용인

- 반면, 불법 의류수거함에 대한 행정대집행 등 사후조치 위주의 업무수행으로 불법 의류수거함 설치 예방의 실효성 미흡

- 의류수거함에 대한 민원이 발생할 경우, 도로 무단적치물로 계고장 부착, 철거, 과태료부과, 반환 등의 사후조치 위주의 업무수행

- 하지만, 반환 한 의류수거함은 또 다른 장소에 불법 설치·운영, 철거 등의 악순환의 연속

<의류수거함 설치·운영 현황(추정)>

(단위: 개)

자치단체명	설치개수	자치단체명	설치개수
서울특별시	19,920	부산광역시	3,670
대구광역시	4,001	인천광역시	9,395
광주광역시	823	대전광역시	1,517
울산광역시	200	세종시	200

경기도	29,451	강원도	1,902
충청북도	5,639	충청남도	9,674
전라북도	2,602	전라남도	2,861
경상북도	4,659	경상남도	7,328
제주특별자치도	1,916	계	105,758

자료) 국민권익위원회 실태조사, 2016. 3.

<도로점용허가 자치단체>

시·도명	자치단체명	자치단체 수
인천광역시	남구	1
대전광역시	서구, 대덕구	2
경기도	용인시, 부천시, 의정부시, 오산시	4
전라북도	익산시	1
경상남도	창원시, 거제시, 거창군	3
계		11

자료) 국민권익위원회 실태조사, 2016. 3.

□ **의류수거함 설치기준 미비**

○ 의류수거함 세부설치기준 미비에 따른 무분별한 설치로 민원발생

- 의류수거함 설치장소 · 개수 · 간격 · 방법 등에 대한 세부설치 기준이 없어 업체간 경쟁적으로 중복 · 난립설치
- 의류수거함 규격, 디자인, 색상, 재질 등에 대한 기준이 없어 동일 구역 내에 각기 다른 형태의 의류수거함을 설치 · 운영하여 도시미관 저해

※ 의류수거함의 종류: 낡은 페드럼통, 대형고무대야, 철제박스, 플라스틱 박스 등



<사진 1> 각기 다른 형태의 의류수거함 설치 사례



<사진 2> 의류수거함 중복설치 사례(I)



<사진 3> 의류수거함 중복설치 사례(II)

○ 의류수거함 설치위치의 부적절로 국민안전 위해

- 의류수거함을 도로여건에 관계없이 주택가 이면도로 임의의 장소에 설치하여 보행자 및 자동차 통행에 불편초래
- 그런가하면, 의류수거함을 주택가 노상주차장, 거주자우선주차장 등의 주변에 설치함에 따라 자동차 주차시 장애물로 전락하는 등 교통안전 위해요소로 작용

<주요 민원 및 언론보도 내용>

- ▶ 의류수거함의 위치가 인도가 아닌 곳에 설치되어 있어 의류수거함에 의류를 넣기 위해서는 무단 횡단을 해야 하므로 교통사고의 위험이 있다.(국민신문고, 2016. 4.)
- ▶ 처음부터 허가받지 않고 불법으로 설치된 무허가 의류수거함들이 그냥 방치되어 거대한 쓰레기장처럼 변질되고 있다.(중앙일보, 2016. 3.)
- ▶ 현재 전국적으로 의류수거함이形形色색 각기 다른 형태로 도심 곳곳에 설치되고, 의류수거함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나 운영부실로 도시의 흉물로 방치되다시피 난잡하게 널려있는 실정이나 대대적인 정비 및 대책이 요구 됨(국민신문고, 2015. 12.)

<자치단체의 주요의견 내용>(국민권익위원회 실태조사, 2016. 3.)

- ▶ 의류수거함은 도로점용허가 대상이 아니라는 이유로 도로점용허가에 미온적 업무수행
- ▶ 의류수거함 설치, 철거 할 수 있는 근거가 없어 업무수행 곤란
- ▶ 의류수거함 설치기준, 도로점용허가 등 전국적으로 통일된 설치·운영지침 마련
- ▶ 「도로법」에 의류수거함 도로점용대상 근거규정 마련

□ 의류수거함 운영기준 미비

○ 의류수거함 운영기준 미비에 따른 생활환경저해로 민원발생

- 의류수거함에 배출 가능한 의류종류, 수거방법 및 시기, 의류수거함 수리·교체시기, 운영·관리자 연락처 표기, 광고금지 등 운영기준 미비
- 의류수거함 주변환경 청결유지 기준이 없어 쓰레기 및 악취, 화재 발생우려 등으로 민원발생

○ 의류수거함 운영에 대한 재하청 성행

- 민간 협회, 단체, 업체 등에서 설치한 의류수거함을 다시 제3자에게 일정수수료를 받고 운영권을 재하청하여 운영
- 따라서 운영능력 이상의 의류수거함 설치 선점권(독점권) 획득을 위한 유사 업체 간의 과열경쟁 유발로 분쟁발생

□ 의류수거함 관리기준 미비

○ 의류수거함 표준 관리기준 미비로 정주환경 훼손

- 파손, 훼손, 색상 변색된 의류수거함을 장기간 배치 및 광고난무 등으로 인해 도시미관 훼손
- 의류수거함 주변에 무단투기, 의류가 아닌 타 종류의 쓰레기 혼입, 불규칙한 수거주기, 관리부실 등으로 주택가 생활환경 저해

※ 의류수거함 주변에는 이불류 및 각종 쓰레기 무단투기가 이루어지나, 의류수거함 설치·운영자는 의류만 수거하고 주변 정리는 소홀



<사진 4> 장기간 방치된 의류수거함



<사진 5> 광고가 난무된 의류수거함



<사진 6> 의류수거함 주변에 무단투기 사례(I)



<그림 7> 의류수거함 주변에 무단투기 사례(II)

<※ 깨진 유리창 이론(Broken Windows Theory)>

미국의 범죄학자인 제임스 윌슨과 조지켈링이 1982년 3월에 공동 발표한 이론으로 '깨진 유리창 하나를 방치하자 사람들이 쓰레기를 버려 주변환경이 급속히 나빠지면서 결국 그 지점을 중심으로 범죄가 확산되기 시작한다는 이론으로, 사소한 무질서를 방치하면 큰 문제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는 의미

○ 의류수거함 관련업무 주관부서 부재로 관리미흡

- 재활용관련 업무는 자원순환과(청소과), 도로점용허가는 도로과, 도로 적치물 정비는 가로정비과, 건설관리과 등 관련부서 다원화
- 또한, 의류수거함에 대한 관리업무 주체가 명확하지 않아 의류수거함 설치현황, 설치·운영자 파악 등 관리 미흡

<주요 민원내용>

- ▶ 의류수거함 주변이 지저분합니다. 처리해주세요(국민신문고, 2016. 4.)
- ▶ 의류수거함 주변에 이불, 나무 등 무단투기 등이 자주 발생하니, 의류수거함의 관리가 잘 될 수 있도록 해 달라.(국민신문고, 2016. 4.)
- ▶ 의류수거함 관리자명과 연락처가 없고, 구청에서 관리를 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야 함(국민신문고, 2016. 4.)
- ▶ 의류 수거함 전면에 이용 안내문(관리번호, 수거품목 내용, 수거하지 않는 품목내용, 수거업체 및 전화번호 등)을 서식화하여 부착·관리하여야 함(국민신문고, 2015. 10.)

<자치단체의 주요 의견내용>(국민권익위원회 실태조사, '16. 3.)

- ▶ 의류수거함 중복설치 및 난립, 통일된 기준부재 등으로 도시미관 저해
- ▶ 도로부서와 자원순환부서와의 의견 충돌 해소를 위한 관리부서 일원화 필요
- ▶ 전국적으로 통일된 가칭 '의류수거함 설치·운영지침' 제정 필요

【언론보도 사례】

- ▶ 크기와 모양도 제각각인 의류수거함이 30m도 안 되는 거리에 5개나 됩니다.(JTBC, 2015. 12.)
- ▶ 돈벌이 수단으로 전락한 의류수거함(국민일보, 2015. 12.)
- ▶ 의류수거함 헌옷, 어디로 가나? 확인해 보았더니(JTBC, 2015. 12.)
- ▶ 의류수거함에서 옷 꺼내 입은 몽골유학생, 처벌 수위는(중앙일보, 2016. 3.)

3. 의류수거함 운영업체 선정방법의 투명성 미흡

【현황 및 문제점】

□ 의류수거함 운영업체 선정 및 심사기준 미비

○ 의류수거함 운영업체 선정의 투명성 미흡

- 일부 자치단체는 지역의 특정 민간 협회, 단체, 업체 등과 업무협약 체결 등의 방법을 통해 의류수거함 설치·운영
- 하지만, 의류수거함 설치·운영업체 선정기준이 없어 운영업체 선정과정의 투명성 미흡

<의류수거함 주요 설치·운영업체 현황>

구 분	주 요 업 체 명 칭
협 회	시각장애인협회, 의류재활용연합회, 의류재활용협회, 의류환경연합회, 인천장애인협회, 한국교통장애인협회, 한국장애인이워크협회, 한국재활용의류수거연합회, 자원순환재활용협회, 장애인협회, 지체장애인협회, 기능장애인협회, 장애인연합회, 의류자원순환협회, e-work 협회 등
단 체	고엽제전우회, 대한고엽제전우회, 오병이어복지회, 유니복지회, 특수임무유공자회, 장애인복지회, 재활용협의회, 대한민국특수임무수행자회, 한국의류자원순환 사회적협동조합, 의류자원순환협동조합, 대한고엽제전우회, 재활용의류협동조합, 장애인복지협의회, 희망국가유공자용사촌 등
업 체	경원자원, 금성환경, 나눔환경, 녹색토탈 종합무역, 대림환경, 대성환경, 대한공해, 동방자원, 동부자원, 동아재활용센터, 두림환경, 디엔에스, 삼성환경, 선진물류, 성남환경, 신세계자원, 신우설비, 양곡자원, 유진기업, 은성개발, 인화자원, 한국리사이클링, 신성자원, 케이컴퍼니, 세종자원, 장애인 재활용, 중앙자원, 희성자원, ㈜서경알아이, 중앙기업, 중원기업, 평화, 한성산업, 한진용역, 환경개발 등

○ 의류수거함 업체선정을 위한 심사기준 미비

- 의류수거함 운영업체 선정을 위한 심사기준, 심사위원의 구성 등에 대한 세부기준 없이 업체를 선정·운영

□ **의류수거함 신규 사업자 진입기회 제한**

- 의류수거함 운영업체를 자치단체와 수의계약 형태의 업무협약 등을 체결하여 선정·운영하고 있으나,
- 의류수거함 설치 및 운영·관리기간, 신규업체의 참여방법 등에 대한 세부기준이 없어 신규사업자 참여기회 곤란

※ 권익위원회 실태조사결과, ○○광역시의 기초자치단체의 경우 의류수거함 운영업체 선정방법 등에 대한 규정 없이 위탁·운영

IV. 개선방안

1. 폐의류 관련규정 명확화

□ 폐의류 배출방법 관련규정 개선

- 폐의류는 의류 전용수거함(의류수거함)에 배출하도록 관련 규정 명확화
 - 폐의류 배출방법을 의류수거함을 통해 배출하도록 개선하여 폐기물화되는 것을 최소화하고, 자원의 효율적 재활용이 가능하도록 관련 규정 개선

「재활용가능자원의 분리수거 등에 관한 지침」[별표 1]

현행	개정안(예시)
- 물기에 젖지 않도록 마대 등에 담거나 묶어서 배출 ※ 자치단체 또는 민간 재활용사업자가 비치한 수거함에 배출	- 자치단체 또는 민간 재활용사업자가 비치한 의류 전용 수거함에 배출

□ 의류수거함 도로점용허가 대상 명확화

- 도로점용허가 대상 해당여부에 대한 지침을 전국 자치단체에 시달
 - 도로에 의류수거함을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 「도로법 시행령」 제55조에 따라 도로점용허가 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에 대한 명확한 지침을 전국 자치단체에 시달하여 행정업무 수행에 혼란 예방

2. 의류수거함 설치 및 운영관리 개선

□ 의류수거함 설치·운영방법 개선

○ 의류수거함 설치방법 개선

- 의류수거함을 도로에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 반드시 도로관리청의 도로점용허가를 받은 후 설치하도록 의무화
- 자치단체 실정에 맞게 의류수거함 설치방법을 개선하여 운영관리 및 자원재활용의 효율화 제고를 통해 민원해소

<의류수거함 설치·운영 방법(예시)>

- (1안) 폐기물처리업자 또는 폐기물처리신고자 등이 도로점용허가를 받은 후 의류수거함을 설치·운영하는 방법
- (2안) 자치단체에서 도로점용 허가를 받은 후 의류수거함을 설치하고, 운영은 폐기물처리업자 또는 폐기물처리신고자 등에게 위탁하는 방법
- (3안) 자치단체와 민간 협회, 단체, 업체 등이 업무협약 체결하여 도로점용허가를 받은 후 의류수거함을 설치·운영하는 방법 등

<대안별 장·단점>

개선안	장 점	단 점
1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의류수거함 제작, 설치비용 절약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의류수거함 설치장소가 「도로법」상 도로¹⁾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 도로점용료 부과 시 논란소지 내재 · 도로점용료 부과에 대한 부담가중 · 민원발생시 이동, 철거 등 신속한 대응 조치곤란 · 운영업체 효율적인 관리 곤란 · 신규업체 참여기회 제한
2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효율적 운영관리로 민원발생 최소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의류수거함 제작, 설치 초기비용 발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총량제 실시로 무분별한 설치통제 가능 · 도로점용료 부과에 대한 부담해소 · 운영업체 선정의 투명성 강화(공개경쟁) · 자원의 효율적 재활용 · 신규업체 참여기회 제공으로 일자리 창출 · 통일된 의류수거함 설치로 도시미관 저해 최소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업체선정 및 관리를 위한 업무량 증가
3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의류수거함 제작, 설치비용 절약 · 업체선정 용이 · 총량제 실시로 무분별한 설치통제 가능 · 자원의 효율적 재활용 · 통일된 의류수거함 설치로 도시미관 저해 최소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의류수거함 설치장소가 「도로법」상 도로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 도로점용료 부과 시 논란소지 내재 · 도로점용료 부과에 대한 부담가중 · 신규업체 참여기회 제한

□ 의류수거함 운영·관리방법 개선

○ 의류수거함 설치 및 운영관리에 대한 세부기준을 마련하여 의류수거함 설치·운영의 효율화 도모

- 자치단체 지연여건 및 실정에 맞게 ‘자원재활용에 관한 조례’ 개정 또는 가칭 ‘의류수거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지침(방침)’ 등을 마련하여 의류수거함 설치·운영의 효율화 도모

<가칭 ‘의류수거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지침’> (예시)

1. 의류수거함 설치

- 의류수거함 설치원칙
 - 설치개수는 자치단체의 실정에 맞게 결정하되 총량제로 운영
 - 의류수거함 설치는 도로관리청의 도로점용허가 후 설치·운영
- 의류수거함 설치방법

1) "도로"란 차도, 보도(步道), 자전거도로, 측도(側道), 터널, 교량, 육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로 구성된 것으로서 제10조에 열거된 것(고속국도, 일반국도, 특별시도·광역시도, 지방도, 시도, 군도, 구도)을 말하며, 도로의 부속물을 포함한다.(「도로법」 제2조제1항제1항)

- 설치위치는 주민센터, 노인정, 대형할인마트 등 공공시설에 우선 설치하고, 주택가 이면도로 등은 보완적으로 설치하여 설치개수 최소화
- 설치방법은 도로점용허가를 받은 후 자치단체의 장이 정하는 방법으로 설치·운영
- 규격, 재질, 색상, 디자인 등은 자치단체의 실정에 맞게 통일화

○ 의류수거함 설치장소

- 주민불편 없는 적정장소에 설치
- 도로구조 영향, 교통지장이 없는 장소(2차로 이상 및 6m이상 도로 설치 자제)
- 중앙선이 있는 도로변 의류수거함 설치 지양
- 학교주변 보도 및 공원 내 설치 지양
- 도로변 사유지에 설치 자제 등

2. 의류수거함 관리

○ 의류수거함 관리주체

- 의류수거함 운영·관리 주관부서는 자원순환과, 청소과 등에서 시행, 도로점용허가, 불법 의류수거함 정비 등 관련부서 협조사항은 주관부서에서 관련부서에 협의 또는 의뢰하여 시행

○ 의류수거함 관리방법

- 의류수거함 운영·관리 주관부서는 의류수거함 관리대장 작성
- 파손, 훼손, 색상변색 등으로 민원발생 및 생활환경을 저해하는 의류수거함은 즉시조치
- 의류수거함 관리번호 부착 및 설치·운영자 실명제 운영 등

※ 관리번호 부착(예시)

- 관리번호: - 호
- 운영자(상호):
- 연락처:

3. 의류의 범위

○ 배출가능 의류종류 안내문 부착(예시)

- 배출 가능한 제품: 헌옷, 가방, 담요, 누비이불, 침대커버, 커튼
- 배출 불가능한 제품: 솜이불, 베게, 신발, 롤러스케이트, 바퀴가방

4. 운영 위탁기간(자치단체의 실정에 맞게 조정)

- 운영 위탁기간은 3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장가능
- 운영 위탁기간이 초과한 경우에는 공개경쟁으로 선발 등

5. 의류수거 방법 및 시기(자치단체의 실정에 맞게 조정)

- 의류수거는 주 2회 이상하되, 수거함이 용량을 초과할 경우 등에는 수시로 수거 등

6. 의류수거함 및 주변 환경 청결유지

- 의류수거함 및 주변 환경을 수시로 정리하여 청결유지
 - 청결상태 민원발생 즉시 처리
 - 의류수거함에 광고금지 등

7. 수탁자의 권한 및 의무

- 수탁자에게 의류수거함 운영 이외에 권한은 존재하지 않음
- 수탁자는 의류수거함 위·수탁 계약서 내용을 성실히 수행
- 수탁자는 자치단체의 장이 의류수거함 이동, 철거 등의 명령에 즉시 이행
- 주민불편 사항 및 민원 대응 방법 등

8. 수탁자 평가

- 자치단체의 장은 수탁자의 의류수거함 운영·관리 실태를 연 2회 실시
- 자치단체의 장은 수탁자의 의류수거함 운영·관리 실태평가 위한 자료제출 요구
- 자치단체의 장은 의류수거함 운영·관리 실태평가 결과 활용 및 조치
 - 의류수거함 운영·관리 위탁의 해지
 - 의류수거함 운영·관리 구역의 확대 또는 축소 조정
 - 위탁기간 연장 여부결정에 반영
 - 평가결과에 대한 시정조치 명령 등
- 자치단체장은 실태평가계획을 매년 2월말까지 수탁자에게 통보 등

9. 시정조치

- 자치단체장에게 시정조치 명령권한 부여
- 시령명령 위반 수탁자에 대한 조치 등

10. 업체선정방법(자치단체의 실정에 맞게 조정)

- 최초 3년간은 기존 업체의 운영권 보장
- 일정기간 후 공개경쟁을 통해 운영·관리 업체를 결정
- 장애인단체 등 비영리법인 등에게는 인티브 부여 등

11. 운영·관리 위탁 해지 및 구역변경

12. 사고책임

13. 기타

□ 의류수거함 관리부서 명확화 및 관리 강화

○ 의류수거함 관리부서 명확화

- 의류수거함 설치, 운영, 위탁업체 선정 및 관리 등 의류수거함에 대한 설치·운영 주관부서(자원순환과, 청소과 등)를 명확히 하고,
- 도로점용허가, 불법 의류수거함 정비 등 관련부서의 협조가 필요한 사항은 주관부서에서 관련부서와 협의·시행하는 등 자치단체 실정에 맞게 업무범위 명확화

○ 의류수거함 관리강화

- 의류수거함별 관리번호 부여 및 관리대장 작성 등을 의무화하여 관리효율화 제고
- 의류수거함 번호, 설치위치, 제작연도, 설치연도, 관리·운영자 및 연락처 등을 작성하여 관리

<의류수거함 관리대장(예시)>

연번	설치위치	제작연도	설치연도	관리·운영자	연락처	비고
1	00로123번길 456		2016. 7. 1.	000	010-000-0000	
2						
3						
}						

3. 의류수거함 운영업체 선정방법 개선

□ 공개경쟁제도 도입

- 의류수거함 운영업체는 공개경쟁을 통해 선정하여 투명성 제고 및 신규 사업자 참여기회 확대
 - 최초 일정기간 동안은 기존업체에 운영권을 보장한 후, 공개경쟁을 통해 의류수거함 운영·관리 위탁자를 결정
 - 의류수거함 운영기간은 자치단체 실정에 맞게 결정(예시, 3년을 원칙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장 등)하여 운영
 - 장애인단체, 비영리 법인 등은 인센티브 부여 등의 방법으로 참여의 연속성 부여

□ 의류수거함 운영업체 선정기준 마련

- 의류수거함 운영업체 선정을 위한 심사기준, 심사위원의 구성 등 세부기준을 마련하여 의류수거함 운영업체 선정의 투명성제고

V. 조치사항

- 권고일자 : 2016. 7. 25.
- 대상기관 : 환경부, 국토교통부, 전국 기초자치단체
- 조치사항 및 조치기한 : 2017. 8. 25.

세 부 개 선 과 제	관계법령	관계부처
<input type="checkbox"/> 폐의류 관련규정 명확화		
○ 폐의류 배출방법 관련규정 개선	「재활용가능자원의 분리수거 등에 관한 지침」[별표 1]	환경부
○ 의류수거함 도로점용허가 대상 명확화	도로점용허가대상 관련 지침시달	국토교통부
<input type="checkbox"/> 의류수거함 설치 및 운영관리 개선		
○ 의류수거함 설치방법 개선	「자원재활용에 관한 조례」 개정 또는 가칭 「의류수거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지침」 마련	전국 기초자치 단체
○ 의류수거함 운영·관리방법 개선	「자원재활용에 관한 조례」 개정 또는 가칭 「의류수거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지침」 마련	
○ 의류수거함 관리부서 명확화	「자원재활용에 관한 조례」 개정 또는 가칭 「의류수거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지침」 마련	
○ 의류수거함 관리 강화	「자원재활용에 관한 조례」 개정 또는 가칭 「의류수거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지침」 마련	
<input type="checkbox"/> 의류수거함 운영업체 선정방법 등 개선		
○ 공개경쟁제도 도입	「자원재활용에 관한 조례」 개정 또는 가칭 「의류수거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지침」 마련	
○ 의류수거함 운영업체 선정기준 마련	「자원재활용에 관한 조례」 개정 또는 가칭 「의류수거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지침」 마련	